

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시행지침

2023. 6.



경 상 남 도
(친환경농업과)

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시행지침

세부사업명	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				세목	자치단체 경상보조
내역사업명	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				예산 (백만원)	1,025
사업목적	○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, 환경보전,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					
사업 주요내용	○ 임신부터 출산·이유기까지, 친환경농산물 공급(연 30만원 수준)					
근거법령	○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55조 ○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0조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○ '22. 1. 1.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(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임신 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)					
지원한도	○ 임산부 1인당 연 30만원(자부담 6만원) * 시·군 여건에 따라 지원한도액 증액가능(증액분 시·군 부담)					
재원구성 (%)	도비	20	시군비	60	자부담	20
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(현황)	(단위: 백만원)					
	구 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
	합 계	1,845	1,128	1,606	1,025	
	국 고	738	451	643	-	
	도 비	148	90	128	205	
	시군비	590	361	514	615	
	자부담	369	226	321	205	
담당기관		담당과		담당자	연락처	
경상남도		친환경농업과		진우근 한철기	055-211-6312 055-211-6315	
신청시기	시군별 상이			사업시행기관	시장·군수	

1. 지원 자격 및 요건

- 임신부(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,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136호)에 따른 임신·출산 확인서,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신부)
 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
 -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% 이하인 임신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*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

2. 지원 품목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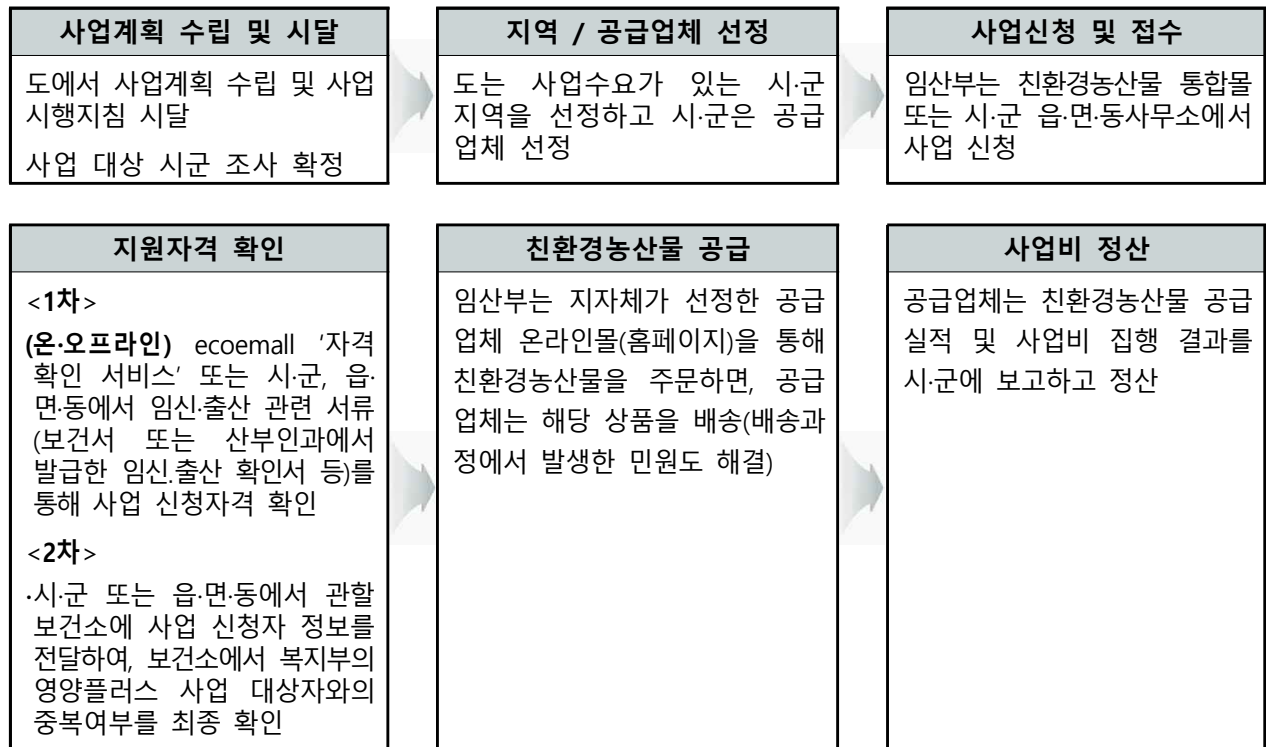
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·무농약농산물,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,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
 - 임신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,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, 정기 공급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
 - 해당 시군 내에서 생산·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, 부족한 물량은 경남도내 또는 전국에서 조달하여 공급
 - * 공급 품목은 전체 금액기준 60% 이상 경남도내 생산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공급
 - *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유기축산물,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, 동물복지 인증품에 한하여 지원(단, 한우·달걀·돼지고기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 가능)

3. 지원방식

- 사업 지역 내 임신부(임신부+출산부)에게 친환경농산물,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
 - (공급업체 선정) 시군 자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광역 유통업체 선정
 - * 선정된 공급업체는 조속히 생산자 확보, 쇼핑몰(홈페이지) 정비, 포장재 제작 등 준비
 - (지원신청) ①온라인 통합몰(www.ecoemall.com)에 온라인으로 신청, 또는 ②임신·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·군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·신청, 이후 지자체는 자격 검증 및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

- (주문 및 배송) 임신부는 온라인 쇼핑몰(공급업체 홈페이지 등)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, 공급업체는 임신부에게 지체 없이 배송
- (지급 및 정산) 지자체는 사업 확정(고유번호 부여)된 임신부에 한하여 사업비를 매월 또는 분기별 공급업체에 선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예산 집행 후 사후 정산

< 체계도 >



4. 지원조건

○ 예산규모 : 1,025백만원

- 지원형태 : 도비 20%, 시군비 60%, 수혜자 부담 20%

* 단, 시·군별 예산 사정에 따라 연간 지원금액 증액 가능

○ 지원한도 : 임신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30만원 상당

* 1회 공급 한도금액: 30,000원 이상 100,000원 이하(100,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) 잔여금액이 30,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잔여 30,000원 미만 주문가능

** 단, 선택형이든 완성형이든 꾸러미 선택 시 꾸러미 구성 금액 중 **농산물** 비중 금액은 **50% 이상**(가공식품 포함)으로 설정

○ 지원기간 : 대상자 확정(고유번호부여) 후 '23. 12. 15.까지

- 대상자 확정(고유번호부여)* 후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
- 시·군에서는 임신부의 온라인 회원 가입 여부와 미주문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대상자 취소 여부 최종 결정

* 공급업체 주문사이트 오픈이 고유번호 부여일보다 늦은 경우 주문사이트 오픈일 기준

○ 지원근거: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, 제55조,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제10조

【 기본 원칙 】

- ◆ 시행주체인 시·군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**합리적인 가이드라인**을 제시하여 **정책의 일관성** 유지
- ◆ 사업의 취지를 살려 **본 사업과 가장 유사하게 설계·추진**하되 예상되는 **문제점을 충분히 진단**하여 향후 사업 확대에 대비
- ◆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**‘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’**이 각인될 수 있도록 가치확산 교육 및 홍보 추진

1. 지원 ‘명칭’ 및 지원한도

- (명칭) ‘꾸러미’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‘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’로 명명
- (지원한도) 1인당 연간 300,000원 이내 지원, 초과 금액은 자부담
 - 지원한도, 횟수 등은 시·군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

2. 공급제품 관리

- (공급제품)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, 축산물(일부), 가공식품
- (품목구성)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경남도 및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하되 **공통품목*** 적극 활용

* 임산부가 선호하는 신선 과일·채소류 및 축산물, 가공식품 등을 ‘품목선정위원회’에서 선정

- (생산지역) 국내산으로 하되,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(해당 시·군 및 경남도내) 친환경농산물 공급 권장

3. 공급제품의 품질관리

-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 과일·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,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관리
- 꾸러미 품질 및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·포장,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▶ 시·군에서는 농관원 협조하여 농장·공급업체에 대한 전담관리제를 실시하고, 점검결과 미흡 사항 등은 지역협의회(월 1회 개최)에서 대응방안 모색 및 시정 개선

4. 식생활교육 등과 연계

-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의 가치, 윤리적 소비 등 가치확산 교육 병행
→ 필요 시 식생활 교육 또는 비만 예방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

1. 사업지역 선정

- 사업 참여를 희망한 시·군 선정
- (참여 신청)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·군은 수요조사서 제출
 - 지역여건, 예산상황, 시·군별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도 사업추진 결정

2. 지역별 사업량 배정

- 도는 시·군별 사업량 배정 시 전년 사업 신청률(대기수요 포함)과 예산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에 대한 사업량을 배정
- 시·군은 신청량과 대기수요 발생량, 사업잔량 등을 파악하여 도에 보고
 - 도는 시·군별 잔여수량 및 대기수요에 따라 시·군간 사업량 재배정
 - 도는 배정된 사업량 내 대기수요가 발생한 시·군에 사업량을 전배하고 대기자 선정 등 추진

2. 공급업체 선정

- (선정신청) 사업 참여를 원하는 유통업체는 **사업계획서***를 작성하여 관할 시·군에 선정신청서(서식#6)를 제출
 - * 사업신청서,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,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, 주문·배송시스템, 생산자 조직(친환경집적지구 등)과의 연계,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 등
- (선정심사) 시·군은 **심사위원회***를 구성하여 서면(50%) 및 현장평가(50%)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,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(서식#7 참조)
 - 단, 공모신청접수 결과 선정업체수의 2배수 이상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 1차 선정 후, 1차 선정업체 중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수 있으며, 시·군 필요시 자체 심사규정을 정하여 추진 가능
 - (심사위원회) 시·군은 지역의 생산자·소비자 단체, 농산물품질관리원,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
 - * 유통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, 지역주민(생산자·소비자단체)이 참여하는 협의체(5인 내외) 구성
 - (서면평가) 시·군은 작업장 인증 여부(취급자, GAP, HACCP), 시설·장비 현황, 사업조직역량,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, 품목다양화 역량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
 - (현장평가) 심사위원회는 실제 시범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, 발표 및 면담,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하여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
- (공급계약) 시·군은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도에 그 결과를 제출

3. 시행 준비

- (주문시스템) 공급업체 온라인 쇼핑몰(홈페이지)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된 공급업체는 쇼핑몰 등록 및 주문 건에 대한 신속한 공급체계 구축
 - 시·군과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쇼핑몰 등록, 포장재 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준비 완료
- (상품등록) 상품등록(품목, 가격, 배송정책 등)→상품승인(시·군)→상품판매
 - 시·군에서는 공급업체 대상 쇼핑몰 운영 및 주문관리, 민원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사업 시행 전 실시
- (포장재 등)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 제작 완료
 - 시·군에서는 적절한 포장재 규격, 디자인, 공통로고 등을 정하여 제품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
- (홍보·교육) 시·군에서는 시범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함께 추진
 - 필요 시 전문업체를 통해 수혜자의 기호에 맞는 꾸러미 상품 개발,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실시

IV

공급절차

1. 지원 신청 및 접수

- (지원대상)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중 구비서류*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·군 또는 읍·면·동에 제출한 자
 - *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,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136호)에 따른 임신·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며, 임신·출산확인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
 - * 국내 거주 외국인: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
- 2023년 사업기간은 사업확정 통보일부터 12. 15.까지
-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·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
-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○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의 지원을 받는 임신부

*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

- (지원 신청) 통합몰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(서식#1) 및 구비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·군 또는 읍·면·동에 서면으로도 제출
 - 신청서는 시·군별로 고지된 주민등록지의 시·군 또는 읍·면·동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관은 임신·출산확인서,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·출산 여부를 확인
 - 시·군에서는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일로부터 **선착순** 모집 가능하며, 중도에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**추가 모집** 가능
 - 공급업체에서는 지원기간 및 사업포기자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신청자가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
- (수혜대상 검증)
 - 시·군(읍·면·동)은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시·군 보건소에 제공
 - 시·군 보건소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 등의 수혜 여부를 시·군(읍·면·동)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 검증 추진
- 고유번호 부여 및 선정 통보
 - 최종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게 시·군 또는 읍·면·동에서 고유번호*를 부여하고 선정결과 및 고유번호를 통보, 필요시 관리대장(서식#2)에 기록하여 관리
 - * 총 13자리로 본 고유번호 양식을 준수: 연도(00) - 시·군(000) - 읍·면·동(000) - 식별번호(0000) - 지원횟수(0), 예시) 23-001(창원)-500(가음정동)-0001-1
- (임산부 회원가입)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
 - 임산부는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,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(조건 미충족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취소 여부 결정)
 -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(다른 아이 임신 또는 출산 시는 신청 가능)
- (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) 사업 지원기한은 '23년 12월 15일까지이나, 지원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사업종료 기준일로 함

2.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

【 지원한도 】

- 임산부 1인당 30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(고유번호 부여일)로부터 '23년 12월 15일까지 지원

- 배송 횟수는 월 4회(연 10회)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
- * 1회 공급 한도금액: 30,000원 이상 100,000원 이하
- * 다만, 단품으로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하는 과일·쌀 등은 3만원 이하 주문가능(가능품목은 공급업체가 홈페이지 등록)
-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은 물류비(배송),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

【 농산물 주문 및 결제 】

- (회원가입)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및 로그인
 -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 가입 내용과, 시·군(읍·면·동)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
- (주문) 임산부가 품목을 ①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②이미 구성된 꾸러미, ③공급 프로그램 선택 가능
 - ① (선택형) 임산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
 - ② (완성형)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,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
 - * 예) 임산부 과일 꾸러미, 임산부 채소 꾸러미, 임산부 기력 보충 세트, 임산부에게 좋은 흑임자 죽 만들기 세트, 임산부 몸보신 삼계탕 만들기 세트
 - ③ (프로그램형) 한번에 3~12개월치 친환경농산물 공급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기간 동안 별도의 주문 없이 배송 받는 방식
 - * 예) ○○○박사가 원하는 임산부 건강식(12개월), 출산 후 붓기에 좋은 산모 영양 프로그램(6개월), 우리 아기 이유식 첫걸음(3개월)
- (결제)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*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권장
 - * 무통장입금, 신용카드, 전자지불, 휴대폰 소액결제 등
- 업무 여건상 수혜자 부담액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괄 납부 허용

【 꾸러미 상품 제작 및 관리 】

- (제작기준)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·완성형·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
 - 가격대는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되, 완성형·프로그램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5,000원 단위로 제작 권장
 - 선택형으로 공급하는 단품은 개별 품목별 원활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250원 단위로 공급 권장
 - 도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광역 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장려, 필요 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 가능
 -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·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매 가격을 참고하여 광역시·도와 공급업체가 「지역협의회」에서 협의하여 결정

- 공통품목은 생산 시기 미도래·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급불안 시기 등을 제외하고 상시 구비 하여야 함.
- **(농산물 확보)** 농산물 원물은 친환경 집적지구,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우선 권장
 - * 어떤 공급업체가 A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외 B, C, D 시군 지역의 임산부에게도 공급할 경우 B, C, D 지역의 친환경 농가의 생산물도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처를 다양화할 것.
- **(가공)** 친환경농산물 **취급자 인증, HACCP 지정** 등 적정한 **품질·위생관리 체계**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(선별, 세척, 1차 가공 등) 실시
 -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,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.
- **(포장)**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,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
 - **포장재**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,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**친환경 소재, 회수 가능한 용기**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
- **(안전관리)**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납품 농가의 원물과 기존 납품농가의 신규납품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사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자체 검사를 통해 적합품임을 확인하여야 함

【 배송 】

-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(배송방식 지자체 지정 가능)
 -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시·군이 동의한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,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.
 -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간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음.
 -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.

3. 품질관리

- 시·군에서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**이력관리** 및 **품질·위생관리** 수준을 전담자를 통해 **모니터링**하고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**안전성 검사** 실시
 - 시·군은 관련 부서, 농관원(생산·유통단계), 유통공사, 지역보건환경연구원(유통단계)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* 추진
 - * 취약 시기 및 품목을 고려하여 생산자별로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추진
- 시·군에서는 공급업체를 정기·수시 점검하고 특히 공급계약 시 약속한 준수사항*을 이행하는지 확인 및 조치
 - *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, HACCP사업장 지정 등의 행정처분, 품질 및 위생 기준, 친환경 포장재 사용, 광역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, 반품 및 환불처리, 민원사항 등
- **공급업체는**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 제작 및 제공을 위해 「별표1」의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함
 -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에 이상(배송착오, 변질 등)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, 교환 및 환불 등 즉시 처리
 - 특히,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산물이 임산부에게 공급된 경우 즉시 임산부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실시 후 해당 조치사항을 도에 통보(발생일 후 5일 이내)
- 점검반은 공급업체 품질관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문서에 의한 시정 및 지적을 할 수 있음.

4. 공급비용 정산

- 시·군은 매월 말 고유번호를 발급한 확정 인원수 기준으로 자부담분을 제외한 농산물공급비(사업비)를 공급업체에 집행하고,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공급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제출받아 최종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
 - 공급업체는 본사업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지자체가 선지급한 사업비 중 시·군 확인을 거쳐 확정된 전월 꾸러미 공급대금에 대한 정산액을 인출

5. 홍보 및 교육

- 시·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 정보를 다양한 채널에서 알 수 있도록 온라인(지자체 홈페이지, 맘카페 등)과 오프라인(지역보건소와 읍면동주민센터 홍보자료 비치 및 안내, 현수막 게시, 시군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)을 통해 홍보
 - 특히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동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·군 복지부서와 지역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홍보 실시
- 시범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 가치, 윤리적 소비, 바른 식생활 등 소비자 가치확산 교육 및 홍보 추진

6. 제재 및 보고

-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조건,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,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**공급계약을 중단**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
 - * 공급업체는 농산물을 다룰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
 -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
 -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로 「친환경농어업법」에 따른 친환경취급인증 취소 시 계약 해지
 -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최근 2년 내 잔류농약검사 결과 「친환경농어업법」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- * (1차) 주의+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5,
(2차) 경고+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10,
(3차) 계약 해지+ 향후 2년간 공급업체 선정 배제

이 준수사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, 공급 계약의 일부로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공급계약 중단 및 차기 공급업체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
1. 공급업체는 친환경인증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, 선별·세척·포장 등의 과정은 인증받은 작업장(위탁사업장 포함)에서 이루어져야 함
2. 공급업체 제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품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
3. 공급업체는 제품 입고 시마다 표시사항과 납품서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, 점검기록과 제품 입·출고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함
4. 공급업체는 잔류물질(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) 검사 대상, 검사 주기,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함
5. 공급업체는 자체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제품에 대한 잔류 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공급해야 함
6.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과정에서 잔류물질 검출 등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시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, 해당 제품을 회수·폐기하는 한편, 임산부에게 교환·환불·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 또한, 조치 후 3일 이내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해야 함
7. 공급업체는 상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, 민원 내용·발생 원인·조치 결과 등을 기록해두어야 함
8. 공급업체는 사업점검 기관의 자료 요구, 현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

서식제1호

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신청서

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·제공·이용동의서						
임산부	이름		주소		연락처 (휴대폰)	
	생년월일		임신·출산	* 임신확인일: * 출산예정일: * 출산일:	e-mail	
자녀	이름	☐ 미출생	생년월일	202 년 월 일 (출생신고일:)		
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		- 신청액: 30만원(도비 60,000원, 시군비 180,000원, 자부담 60,000원) ※ 세부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- 지원기간: 사업자선정(고유번호발급) 이후 '23.12.15 까지				
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사항	정보를 제공받는 기관		해당 읍·면·동, 시·군, 도, 시군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등 설문조사 기관			
	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		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			
	개인정보의 항목		주소, 전화번호, 이름, e-mail, 생년월일, 임신 및 출산일			
	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		2023. . ~ 2026. 12. <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>			
	※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※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. ※ 사업자선정(고유번호발급) 후 30일 이내 쇼핑몰 미가입 시, 사업자 선정(고유번호발급) 후 60일 이내 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					
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,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, 제17조, 제18조,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「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」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☐ 동의 ☐ 동의안함						
2023. . . 신청인 (인 또는 서명) 읍·면·동장 귀하						
※ 위임인(신청인)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, 청구,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(공급업체명)에 위임하며, 위 정보는 본 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,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. 2023. . . 위임인(신청인) (인 또는 서명) ○○시장(군수) 귀하						
읍·면·동 확인내용					확 인 자	
■ 시군 거주자 여부: 여(), 부() ※ 신청일 기준 ■ 임신·출산확인서, 산모수첩, 출생신고 확인 결과: 적정(), 부적정() 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 수혜 여부(신청일 기준): ○ / ×					직 성 명	(인)

**서식
제2호**

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신청 관리대장

구 분	임산부 고유번호(13자리)					지원대상 임산부								
	연도 (2)	시군 (3)	읍면동 (3)	식별 번호 (4)	지원 횟수 (1)	이름	생년월일	임신부 /산모	임신확인일 (또는출생신고일)	주소				연락처
										시도	시군구	읍면동	세부주소	
1	23	001	580	0001	1	홍길순	850301	산모	2022.01.02.	경남	창원시 성산구	남양동	000로 0000번길 00, 000동 00호(00아파트)	010-0000-0000
2														
3														
4														
5														

※시군 고유번호 : 창원(001), 진주(002), 통영(003), 사천(004), 김해(005), 밀양(006), 거제(007), 양산(008), 의령(009), 함안(010), 창녕(011), 고성(012), 남해(013), 하동(014), 산청(015), 함양(016), 거창(017), 함천(018)

보조금 청구서

(공급업체 → 시군 제출용 / 월별 청구 서식)

□ 사 업 명: '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

□ 청구금액: 금 원 (금 원)

청구금액	금 도비	원(금 원 / 시군비	원) 원
거래은행			
계좌번호			
예 금 주			

※ 구비서류: 청구서, 개인별 자부담 입금 및 세부 사업내역,
택배송장(또는 택배송장번호), 꾸러미 제작 내역 등

위와 같이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보조금을 정히
청구합니다.

2023년 월 일

보조사업자 주 소:

단 체 명:

사업자번호:

대 표 이 사:

(직인)

○○시장.군수 귀하

☐ 공급업체명(00월)

【2023년 사업】

공급지역 (시군)	확 정				실 적					
	확정인원 (명)	사업비(천원)			공급실적(건)			사업비(천원)		
		계	도비	시군비	계	전월까지	금월	계	도비	시군비
계										

보조금 정산서

(공급업체 → 시군 제출용)

☐ 사업명: '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

☐ 공급기간: 2023. . . ~ 2023. . .

☐ 공급인원

시군	확정인원(명)	공급인원(명)	미공급인원(명)
합계			

☐ 공급실적

(공급연도)

(단위: 건)

시군	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1월	12월
합계												

□ 사업비 집행실적

(단위: 천원)

시군	사 업 비			집 행 액			집행잔액		
	계	도	시군	계	도	시군	계	도	시군
합계									

□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

구 분	회원 미가입	꾸러미 등 미주문	영양플러스사업 전환	기타
인원(명)				
금액(천원)				

위와 같이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.

2023년 월 일

보조사업자 주 소:
단 체 명:
사업자번호:
대 표 이 사:

(직인)

○○시장.군수 귀하

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공급업체 신청서

신청자	생산자단체 등 명칭		법인등록번호			
	이름 (대표자명)		대표자 생년월일	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
	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번호		참여농가 (인증농가)	명	재배면적 (인증면적)	ha
	사업장 주소					
	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작업장 주소					
	전화번호	사무실: (휴대폰:)				
	생산자단체 등의 형태	농업협동조합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협동조합, 기타		주 재배품목		
	친환경농산물 매출액	(2021년) 천원 (2022년) 천원	및 유통품목			

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.

☒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☒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시장·군수 귀하

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(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·이용 동의 사항)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: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의 수행기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: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
-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-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: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
-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공급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.

1. 서류심사

평가요소	평가항목	평가지표	점수
	필수사항	○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○ 온자체 홈페이지 보유 및 운영(쇼핑몰 연계 가능) - 임산부가 회원가입하여 주문, 결제, 정산 등이 가능해야 함. ○ 품질 및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배송 체계를 갖추어야 함 - 보냉박스, 냉장직배, 저온배송 등의 운영으로 입증	
시설장비 현황 (25)	작업장 (15)	○ 친환경농산물 전용 작업장 보유(5점) -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전용 작업장을 보유한 경우: 5점 - 일반농산물과 함께 사용, 교차오염 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: 2점 ○ GAP 또는 HACCP 시설 지정(10점) - GAP, HACCP을 둘 다 받은 경우: 10점 - GAP, HACCP 중 한 가지만 받은 경우: 5점 - 모두 지정받지 않음: 0점	
	공급능력 (10)	○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(5점) - 100㎡ 이상인 경우: 5점 - 50㎡ 이상 100㎡ 미만인 경우: 4점 - 20㎡ 이상 50㎡ 미만인 경우: 3점 - 20㎡ 미만인 경우: 2점 -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없는 경우: 0점 ○ 꾸러미 전담 작업자 확보 여부(5점) - 5명 이상 확보: 5점 - 3명~4명 확보: 4점 - 1명~2명 확보: 3점 - 꾸러미 작업자가 없는 경우: 0점	
사업조직 역량 (30)	참여 유통조직 (10)	○ 친환경농업 집적지구가 참여하고 있는가?(6점) - 친환경농업 집적지구가 공급업체: 6점 - 친환경농업 집적지구와 납품계약 체결: 5점 - 참여하고 있지 않음: 0점 ○ 지역내 공급선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가?(4점) - 모든 시군구 소재 공급선과 거래: 4점 - 일부 시군구 공급선 확보: 2점 - 공급선 없음: 0점	
	참여농가 (10)	○ 공급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인증농가 수(5점) - 100농가 이상: 5점 - 80농가 이상 ~ 100농가 미만: 4점 - 60농가 이상 ~ 80농가 미만: 3점 - 40농가 이상 ~ 60농가 미만: 2점 - 40농가 미만: 0점 ○ 참여 인증농가의 인증면적(5점) - 300ha 이상: 5점 - 250ha 이상 ~ 300ha 미만: 4점 - 200ha 이상 ~ 250ha 미만: 3점 - 150ha 이상 ~ 200ha 미만: 2점 - 100ha 이상 ~ 150ha 미만: 1점 - 100ha 미만: 0점	

평가요소	평가항목	평가지표	점수
관리실태 (30)	친환경농산물 유통경력 (10)	○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(10점) -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100억원 이상: 10점 - 70억원 이상 ~ 100억원 미만: 8점 - 50억원 이상 ~ 70억원 미만: 6점 - 30억원 이상 ~ 50억원 미만: 4점 - 30억원 미만: 2점	
	저온위생관리 (10)	○ 저온 물류집배송장, 냉장 창고, 냉장배송 차량 등 콜드체인 확보 여부(10점) - 전체 유통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: 5점 - 일부 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: 3점 - 해당 없음: 0점	
	불만사항·사고처리 (10)	○ 불만사항 발생 시 항시 대응·처리 체계 구축(5점) - 잔류물질 검사 부적합품 처리 매뉴얼 별도 운영: 5점 - 매뉴얼은 있으나 구체성 결여: 3점 - 대응매뉴얼 없음: 0점 ○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(5점) - 보험 가입: 5점 - 보험 미가입: 0점	
	안전성관리 (10)	○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'품질관리계획' 수립 여부(10점) - 잔류물질 검사 대상, 검사 주기,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'품질관리계획' 수립: 10점 - 품질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성 결여: 5점 - 품질관리계획 미수립: 0점	
품목 다양화 (15)	품목구성 (10)	○ 현재 취급 중인 친환경농산물 품목 수(10점) - 200개 이상: 5점 - 150개 이상 ~ 200개 미만: 4점 - 100개 이상 ~ 150개 미만: 3점 - 70개 이상 ~ 100개 미만: 2점 - 50개 이상 ~ 70개 미만: 1점	
	상품조달체계 (5)	○ 원활한 상품 조달 체계 구축 여부(5점) - 해당 시·도 내에서 상품 수급이 곤란할 경우, 타 시·도로 부터의 상품 수급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: 5점 - 해당 시·도 내 상품 수급만 가능: 0점	
가.감점		○ 공급업체 종합 만족도: ±3점 - 상위 5개소: +3점, 하위 5개소: -3점 ○ 관할 전지역 냉장 직배 체계 구축: +5점 ○ 소비자 대상 친환경교육, 홍보 등 실적: +5점 - 연 10회 이상: +5점 - 연 7회 이상 ~ 10회 미만: +4점 - 연 5회 이상 ~ 7회 미만: +3점 - 연 3회 이상 ~ 5회 미만: +2점 - 연 1회 이상 ~ 3회 미만: +1점	
제한사항		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○ 최근 2년간 「식품위생법」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	

*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하되,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세부기준 변경 가능 (서면 및 현장)

2.현장심사

평가요소	배점	평가지표	점수
사업 이해도 및 시설·장비 적정성 (30)	10	○ 사업 목적과 공급업체의 역할 이해 정도 ○ 사업 전담 관리자 지정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	
	10	○ 상품 제작·공급 능력 1」 임산부 꾸러미 전담 작업장 규모 확인 2」 임산부 꾸러미 전담인력 확보 여부 확인	
	10	○ 온라인 유통·판매시스템 구축 여부 및 역량 1」 고도화된 자체 온라인 주문시스템 구축 여부 2」 자체 온라인 주문시스템 활성화 정도(주문량, 품목수 등)	
공급업체 역량 (70)	20	○ 공급품목 수급계획 1」 임산부 선호 품목 및 공통품목 상시 조달 가능성 2」 구체적인 품목 수급계획 수립 여부 및 타당성 3」 관할 지역내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참여 여부 및 향후 협력 계획	
	20	○ 콜드체인시스템, 위생 및 안전성 관리 1」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- 최근 2년내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시 시정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1회당 5점 감점 ○ 창고 및 작업장은 청결하며, 방충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	
	20	○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- 과거 1년간 관계기관 점검 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1회당 5점 감점 ○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'품질관리계획' 수립·운영 여부 1」잔류물질 검사대상, 검사주기,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'품질 관리계획' 수립 여부 및 유통물량 대비 적정성 2」잔류물질 검사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매뉴얼 구비 여부	
	10	○ 소비자 불만사항 발생 시 처리 및 대처 능력 1」민원 처리 담당자, 대응 매뉴얼 구비 2」매뉴얼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 여부	

※ 5단계 평가: 매우 우수(20/10), 우수(16/8), 보통(12/6), 미흡(8/4), 매우 미흡(4/2)

【 심의위원 의견 】

소속

직위

이름

(서명)